

<참고> 승인기준(시행령 개정사항) 변경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제24조에 따른 현행 승인기준*(시행령 6조)이 다른 법령(은행법, 공정거래법 등)에 비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측면이 있음

*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를 실질적으로 금지

- ① 02.1월 개정된 공정거래법(11조)은 금융계열사의 상장·등록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30%(개정안: 15%)까지 [주식소유 및]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으나,

- 금산법 24조 시행령의 승인기준(97.1월 제정)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현행제도상 금융계열사가 다른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5%이상 소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지됨

- ② 은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얻어 15%이상 비금융회사 주식취득을 허용

※ 출자전환후 은행이 16%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상 승인을 받아 가능하나(금산법상 승인은 제24조① 단서에 의해 면제)

- 출자전환후 은행이 14%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

□ 개정방향

- ①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승인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 보완
- ② 계열분리·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우에도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주식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